

대구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3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38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24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 24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4,569원 및 그 중 14,263,716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25,9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나머지 9,425,9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5,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피고의 아들)가 2017. 6. 28.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7. 2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 1) 피고는, 원고가 불법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30% 이상의 돈을 공제하였고, 2017. 7. 22.부터 2022. 5. 9.까지 19,365,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선이자로 30% 이상의 돈을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별지

변제충당내역표의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는 2021. 6. 16. 송금된 2,000,800원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위와 같이 각 지급된 금액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 사건 차용금채권과 제2항의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고 이자약정이 있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이 사건 차용금에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제충당내역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고, 마지막 변제일인 2022. 5.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14,263,176원, 이자 740,853원이 남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금액 중, 2017. 7. 22. 701,000원 및 2017. 8. 2. 301,000원, 100,800원 합계 1,102,8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새벽에 현금으로 지급한 돈을 받은 것이고, 2022. 2. 17. 150,800원, 2022. 3. 14. 850,800원, 2022. 3. 27. 201,800원, 2022. 4. 1. 250,800원, 2022. 5. 4. 401,800원, 2022. 5. 5. 401,800원, 2022. 5. 9. 201,800원 합계 2,459,600원은 C가 2021. 7.경 원고를 상해하여 그 특수상해 사건의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4,569원(원금 14,263,716원 + 이자 740,853원) 및 그 중 원금 14,263,716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2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9,425,9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7. 8. 13.부터 2023. 3. 3.까지 피고의 계좌로 26,033,6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7. 22.부터 2023. 3. 3.까지 원고 및 원고의 자녀인 D의 계좌로 16,607,7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425,900원(= 26,033,600원 - 16,60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송금 받은 총액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명목이 대여금이라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차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주장도 없는 점, ③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차용인이 C가 아니라 피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규철

판사김준철

판사김승섭

별지

1) 피고가 2024. 10. 21.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및 첨부 자료에는, 2021. 6. 16. 원고에게 보낸 위 200만 원이 C의 특수상해 사건 합의금이라고 되어 있다.